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6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평창군 관할 군부대의 명칭 변경 및 조례의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명확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평창군 비상대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군·경합동상황실의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군기무부대”를 “국군 제557-5 안보지원대”로 변경하여 변경된 군부대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7호)
- 종전의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업무 담당과장”을 “담당과장(병중사태),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과장(을중사태 이상)”으로 하여 운영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4호)
-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상위법령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6항제1호)

- 종전의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명칭을 동일화 하고자 함(안 제3조제5호 가목)
- 종전의 “홍보”를 “홍보, 군·경 합동상황실”로 변경하여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할 군부대 명칭의 변경과 조례의 상위법령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변경된 명칭 반영 외에도 조문의 명확한 표기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편성에 “군·경 합동상황실” 분야를 명시하여 관련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으로, “사고가 있”을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국군 제557-5 안보지원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업무 담당과장”을 “담당과장(병중사태),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과장(을중사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5호가목 중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홍보”를 “홍보, 군·경 합동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u>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 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 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 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u>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u></u></p> <p>②협회의 위원은 다음 <u>각호</u>의 자로 한다. 1. ~ 6. (생 략) 7. <u>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u></p> <p>8. ~ 10. (생 략) ③협회의에는 다음 <u>각호</u>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u>작전담당 간사 : 평창경찰서</u></p>	<p>제2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u>위원 중 ----- 불가피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u> -----.</p> <p>②----- <u>각 호</u>----- -----.</p> <p>1. ~ 6. (현행과 같음) 7. <u>국군 제557-5 안보지원대</u> -- -----</p> <p>8. ~ 10. (현행과 같음) ③----- <u>각 호</u>-----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 4. -----</p>

작전업무 담당과장, 제1670부
대 1·3대대 작전업무 담당과
장

5. (생략)

④·⑤ (생략)

⑥ 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평창군 방위협의회

2. (생략)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가. 향토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생략)

6. (생략)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평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 담당과장(병중사태),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과장
(을중사태 이상)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2.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지역예비군-----

나.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
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
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
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
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편
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
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
으로 구성

② ~ ④ (생략)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
의회 의장이 정한다.

----- 홍보, 군·경 합동상

황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필요-----

-----.